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60

발의연월일: 2022. 4. 1.

발 의 자 : 윤준병 · 이해식 · 신정훈

오영환 • 이정문 • 김상희

민형배 · 홍영표 · 신영대

이성만 • 이수진॥ • 이소영

김정호 · 김성주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태풍 등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국가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기후위 기 시대에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폭

넓게 정의하며,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위험한 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목표 ·추진방향·추진전략·재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함(안 제5조).
- 나. 기상청장이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 책위원회를 둠(안 제6조의2 신설).
- 라. 기상예보와 의미·효력이 다른 기상특보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그 발표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마. 태풍예보를 신설하고, 해양기상예보·특보와 항공기상예보·특보 를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3조의4 및 제14조의2 신설, 안 제14조).
- 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 사.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

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

아.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6조).

법률 제 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상관측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을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상하여 알리기 위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업무의"를 "국가기상업무의"로, "기상업무에 관한"을 "국가기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를 "제6조의2에"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의"를 "기상정책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상업무에"를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를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확용 등에"로, "사항"을 "중점 추진 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을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으로,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에"를 "활용 등에"로, "사항"을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을 "그 밖에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으로, "기술이전"을 "제공"으로, "실용화 촉

진에 관한"을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확정된 기본계획을"을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계획수립 등을 위한협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를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로,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관계"를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상정책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정책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기상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또는 제14조에"를 ", 제13조의2, 13조의4,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선박"을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예보"를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로, "특보를"을 "항공기상특보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일반인을 위한 예보"를 "기상현상"으로, "특보"를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현상에"를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을 "필요한 예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를 "기상현상이"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보·특보를"을 "예보를"로,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보 및 특보의"를 "예보의"로, "내용에"를 "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하거나 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의 종류 및 대상구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태풍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③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의 제목 중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를 "해양기상예보"

로, "특보"를 "해양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를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로, "및 특보"를 "(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및대상구역 등"으로, "특보의 종류·내용에"를 "특보에"로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 관련 활동 및 해양 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 보(이하"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양기상예보 또는 해양기상특보를 하거나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제1항 중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을 "필요한 예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

- 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로, "·내용에 관한"을 "및 내용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 보에 필요한"으로 한다.
-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 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 다.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 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 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 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 ④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보 또는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 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을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특 보를"로.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특 보"를 "기상특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그 통 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을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특보 수신의"를 "수신"으로 하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 관기관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및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 관계 기 관

제17조 단서 중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 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제5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 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 제목 중 "기상업무에"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기상현상"으로, "지식이"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지식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중 "기상청장은 제35조"를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

제35조"로, "수행하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교육기관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로, "지정기주 및"을 "지정 및 변경지정"으로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기관의 운영 및 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 또는 시설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3제3항에"를 "제35조의3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제1항 중 "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에게"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로, "제출하여야"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1.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서류 등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 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보"란 <u>기상관측 결과를</u>	9 <u>미래의 기상현상</u>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을 예상하여 알리기 위하여
것을 말한다.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2장 <u>기상업무에 관한</u> 기본계획	제2장 <u>국가기상</u> 기본계획의 수립
의 수립 등	드
제5조(<u>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u>	제5조(<u>국가기상 기본계획</u> 등) ①
<u>의 수립</u> 등) ① 기상청장은 <u>기</u>	<u>국가기상업무의</u>
<u>상업무의</u>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	
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u>국가기상</u>
마다 <u>기상업무에 관한</u>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	②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u>「국가과</u>	제6조의2
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	<u>에</u> <u>기상정책위원회의</u>
<u>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 진에 관한 사항
-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관 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 <삭 제>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 항
-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 | <삭 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1.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

2.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 및 활용 등에-----중점 추진전략

- 3. 기상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 제공----활용 등에----재원 의 규모 및 조달방안
-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4. 그 밖에 기상업무 관련 정보 의 생산--제공----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삭 제>

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활 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 한 사항
-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 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 |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⑤ -----수립된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을-----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장 및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 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 설>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받은 관계-------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제6조의2(기상정책위원회) ①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 상정책위원회를 둔다.

-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기상업무와 관련된 주요정책 의 수립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
- ② 기상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예보 및 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기상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3조(<u>일반인을 위한 예보</u> 및 <u>특보</u>) ① 기상청장은 <u>기상현상</u> 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구축·운영 등) ①
-, 제13조의2, 13조의4,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
청) ①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
<u>특보</u> <u>제14</u> 조의2에 따른 항
<u>공기상예보항공기상특보를</u> -
1 0 (청체코 가 0)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u>기상현상</u> 및 <u>기상영향에</u>
대한 예보) ① <u>국</u>
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기상

<u>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u>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 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 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예</u> 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 설>

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비	대
응할 수 있도록 기상현상에	
필요한 예보를	
- .	
②기상현상이	
_ 	
<u>관계</u>	
<u>.</u>	
3	
예보를	
۸۱ - با ۸۱.	
<u>알려야</u>	
4	<u>예</u>
보의내용 및 대상구역	등
<u>에</u>	
제13조의2(기상특보) ① 기상청	<u>장</u>
은 기상현상이 대통령령으	

<u>제13조의2</u>(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생 략) <신 설>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특보가 예 상되고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상특보의 가 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하거나 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의종류 및 대상구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13조의3(기상학적 가뭄의 예보)</u>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

제13조의4(태풍예보) ① 기상청장 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대응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에서 태 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해당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필요한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 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예보(이하 "태풍예보"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태풍예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 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 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③ 태풍예보의 내용 등 태풍예 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상특보) 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이하 "해양기상 예보"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 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 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 관련 활동 및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 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신 설>

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 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릴 수 있다.

- ④ 기상청장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라 해양기상예보 또는 해양기상특보를 하거나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 에 알리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 하여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 ⑤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 특보의 종류 및 대상구역 등-------특보에-----

-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 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 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 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 다)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 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 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

제14조의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 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 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 다.

③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 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 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 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 특보의 종류 및 내용 등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필요한 예보를-

> ②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영향을 미쳐 중 대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 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는 경우에는-----만,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 계 기관에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대통령령으로 정

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주공간 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 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예보 또는 특보를 하 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 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 여 알려야 한다.

<u>④</u> 제1항 및 제2항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에 필요한-----

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 특보를-----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 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 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

-----. <u><단서 삭제</u>>

하는 우주 관계 기관에만 각각 통보한다.

- 1. 행정안전부
- 2. 농림축산식품부
- 3. 국토교통부
- 4. 해양수산부
-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 5. -----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 - <u>기상특보</u>-----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신 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

<삭 제>

<삭 제>

-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및 제14조의3제2 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 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특보 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특 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 관계 기관
- 2. 항공기상특보: 대통령령으로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
 체 없이 널리 알리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는 기관의 <u>특보 수신의</u> 절차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 정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기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
3.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
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
주 관계 기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각 기관의
소관 법령에 따라 기상현상으로
<u>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u>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
<u>을 확보하기 위하여</u>
<u>.</u>
<u>④</u> 제1항 또는 제2항에
<u>수신</u>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u>다음 각</u>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할 수 있다</u> .
1.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

<신 설>

<신 설>

2.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제19조의2(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기관 간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 지 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 급 및 교육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 상업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현상 및 기 |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후 분야에 관한 지식이 국민생 활에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② (생 략)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제34조(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과한 지식보급) ① -------기상현상-----

관련 지식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 및 기 후 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의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 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 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저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 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u>④</u> 제2항 및 제3항에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4조제2항·제
<u> 35조</u>
<u>전문적·효율적으로 수</u>
<u>행하기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② (현행과 같음)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교 육기관에 출입하여 기관의 운 영 및 업무의 처리에 관한 서 류, 장부, 그 밖의 물건 또는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u>지정기</u>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한다.
 - 1. (생 략)
 - 2. <u>제35조의3제3항에</u> 따른 교육 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 우
 - 3. (생략)
 - 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을 검사하거나 관계인	<u>]</u>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u> 고</u>
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u>을</u> 변
경하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
<u>야 한다.</u>	
⑤ 그 밖에	- <u>지정</u>
<u>및 변경지정</u>	
]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u>=</u>)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35조의3제1항에</u>	
3. (현행과 같음)	
2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u>경우</u>

<신 설>

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 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4조(업무의 위탁)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다른 목적<u>으로 사용한</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 에 따른 기<u>상청장의 권한은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 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 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 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46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u>(2)</u>	<u>대통령령으로</u>
관계 :	기관·단체 또는 법
인에게 대통령	성령으로 정하는 비
에 따라	
	·
<u>③</u>	<u>제2항에</u>
<u><삭 제></u>	

대한 제출 의무) ①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 립한 경우 이를----------지체 없이 제출하여 o}----.

>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 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 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17조 본문을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 1. 제17조 본문을 위반하여 예 보를 한 자
-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
- 3.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서류 등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